

● 제301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2482)

2021. 6. 21.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이영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482

### I. 조례안 개요

####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이영실 의원 발의(외 12명)
- 나. 제출일자 : 2021년 05월 28일
- 다. 회부일자 : 2021년 05월 31일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안이유

-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4~5분 내에 뇌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장 정지 초기 5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게 되어 있음. 초기 목격자에 의하여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 소생율이 3배 이상으로 증가 가능함.
- 또한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있으며, 심정지가 발생한 후 병원 전 단계의 일반인의 적절한 심폐소생술 시행은 심정지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꼽을 수 있음.
- 본 조례개정안에서는 심폐소생술의 대상을 확대하고, 민관협업방안 구축 등을 통해 서울시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시키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교육계획에 민관 활성화 방안을 명시함. (안 제4조제2항 및 제4항)
- 나. 심폐소생술 교육운영에 필요한 배치인력의 실무기준을 완화하고 자함. (안 제7조제2항제3호)
- 다.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하고, 자동심장충격기 활용법에 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함 (안 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 1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개정안은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자 확대, 민관협력체계 방안을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를 통해 예상치 못한 심정지 사고로부터 서울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제안되었음.

#### 2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가. 심폐소생술 교육의 필요성

-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마비되거나 사고로 폐와 심장의 활동이 정지된 사람에게 인공호흡과 흉부압박을 가해 심장, 폐 등의 기관으로 혈액이 순환되도록 함으로써 산소가 공급되게 하는 응급처치를 의미함.
- 질병관리청(당시 질병관리본부)과 소방청에서 2006년~2018년 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사례 의무기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 급성심장정지 발생건수는 3만 539건으로, 인구 10만명당 59.5명의 수치임.<sup>1)</sup>
- 해당 조사에 따르면 환자가 쓰러지거나 쓰러진 환자를 목격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는 매년 증가( '08년 1.9%→ '17년 21.0%→ '18년 23.5%)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생존율은 약 1.9~3.3배, 뇌기능회복률<sup>2)</sup>은

1) 보건복지부, 소방청 보도자료, “심폐소생술 시행 시 심장정지 생존율 최대 3.3배 향상” <2019.11.26.>

약 2.8~6.2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병원 밖 심장정지는 주로 가정에서 발생하며, 길거리, 공공장소, 운동시설 등 의료시설 외의 장소에서도 발생함. 병원 밖 심장정지의 특성상 의료인이 아닌 목격자가 심장정지가 발생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됨.
- 병원 밖 심장정지가 발생한 사람의 생존여부는 목격자에 의한 심장정지 인지 및 신속한 심폐소생술, 신속한 응급의료체계의 대응, 자동제세동기의 보급과 현장 사용을 포함한 효율성에 큰 영향을 받게 됨. 특히 심장정지를 목격한 사람이 심장정지 상황에서의 행동요령과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을 배우고 실제 현장에서 실행하는 것은 심장정지 치료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음.<sup>3)</sup>

## 나. 조례개정안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 (1)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4조)

- 서울시에서는 이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권리) 및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응급처치 교육·홍보계획 수립 등) 와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교육·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기존 조례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의 대상을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었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2) 뇌기능 회복률 : 급성심장정지 환자가 퇴원 당시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뇌기능이 회복된 상태

3) 질병관리청·대한심폐소생협회(2020).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 으로 포괄적으로 명시해 다양한 시민층을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p>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 시행) ① (생략)</p> <p>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생략)</p> <p>2. <u>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u></p> <p>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u>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u> <u>&lt;신설&gt;</u></p> <p>4. 그 밖에 <u>교육을 위하여</u> 필요한 사항</p> <p>③ (생략)</p>	<p>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 시행)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u></p> <p>3. ----- <u>홍보</u> -----</p> <p>4. <u>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방안</u>에 관한 사항</p> <p>5. ----- <u>심폐소생술 교육에</u> -----</p> <p>③ (현행과 같음)</p>

- 2021년 서울시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을 살펴보면, 의무교육대상 외에도 일반교육, 기본교육으로 교육을 구분한 뒤, 각각 그 과정에 적합하도록 교육대상을 분류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서울시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자별 추진방법

구분	대상	목표	추진방법	교육시간
전문교육 (의무교육대상 등)	(법 제14조 제1항) ·구급차 등의 운전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 ·보건교사, 경찰공무원, 인명구조요원, ·보육·유치원교사 등	1만명	권역응급 의료센터	4시간
	(법 제47조2)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100분
	· HEROS 강사 양성과정		응급의료지원단	4시간
일반교육	· 초등학생(고학년), 중·고·대학생 · 군인 · 사회복지사·공무원·요양보호사·경비원 등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	8만명	자치구	80분
	· 초·중등·기타교사(특수교사 포함)	3만명	권역응급 의료센터	
기본교육	· 노인복지관·경로당 · 미취학 어린이, 초등학생(저학년) 등	8만명	자치구	30분
	· 예비군, 등산로, 지역축제 이용자 등		권역응급 의료센터	

- 본 개정조례안은 이미 서울시의 심폐소생술 교육계획 수립 시에 포함된 대상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 사항은 없다 하겠음.
- 또한, 개정조례안에서는 민관협력방안에 관한 사항을 교육계획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이미 다양한 행정분야에서 민간 분야의 전문성과 참여, 현장성 등이 정책에 반영되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음. 심폐소생술의 경우 우리나라 최초의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이 2006년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대한심폐소생협회의 공동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등 민간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음.

- 본 조례개정안에서는 민관협력체계 방안에 대해 계획에 명시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통해 보다 민간의 전문성이 반영이 반영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교육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 실무인력의 조건완화 (안 제7조)**

- 개정안 제7조에서는 기존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에 배치되도록 하는 실무인력의 조건을 완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① (생략) ② 제1항의 교육장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1급 응급구조사로 구급활동, 병원근무 등 응급의료 실무에 <u>5년 이상</u> 종사하고 있는 자	제7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2. (현행과 같음) 3. ----- ----- <u>3년</u> <u>이상</u> -----

- 2021년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1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교육·홍보계획서」에 따르면 이론교육 및 교육운영을 총괄하는 교육 강사는 의사, 간호사·1급 응급구조사로 구급활동, 병원근무 등 응급의료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어, 본 개정안에서는 그것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동 지침에는 1급 응급구조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모두 응급의료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했을 때 주 강사가 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현 조례개정안에서는 1급 응급구조사의 종사년수만 완화되어 있어 제7조 2항에 명시된 간호사 역시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하겠음.

**(3)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및 정보제공의 필요성 (안 제9조)**

- 해당 조항은 기존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 홍보가 가능하도록 포괄적으로 구성되어있던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시장은 홍보물, 홈페이지 등의 매체나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시민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p>	<p>제9조(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다음과 같은 매체를 활용해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활용에 대한 시민인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 및 정보제공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li> <li>2. 시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li> <li>3.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li> <li>4. 그 외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활용에 대한 홍보와 정보를 제공하는데 용이한 매체</li> </ol>

- 또한, 기존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던 자동심장충격기 활용에 대한 홍보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음.
-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외부에서 자동으로 심장에 전기충격을 주는 장비로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때 심폐소생술과 함께 활용할 수 있음.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의거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등이 지정되어있으나 시민들은 그 활용법에 대한 인지가 낮은 편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개정안을 통해 심폐소생술 교육과 함께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홍보와 정보제공도 함께 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3 종합의견

- 응급의료체계는 환자가 발생한 현장-이송-응급실-최종 치료까지의 과정이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현장에서의 신속한 처치가 예후 개선에 가장 중요한 요인을 차지함.
- 특히 급성심장정지는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제공에 따라 생존율을 3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으며, 2019년 일반인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는 24.7%로 2006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 특히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의 생존율은 2019년 기준으로 15%로 심폐소생술을 받지 않은 환자가 6.2%인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음.<sup>4)</sup>

4)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멈춘 심장 되살리는 심폐소생술, 2020년 지침 개정” <2020.12.8.>

- 이처럼 급성심장정지 환자들에게 실시하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과 홍보는 강화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사료됨. 본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의 심폐소생술 교육의 활성화와 홍보의 추진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하겠음.

문 의 처

도미화 입법조사관 (02-2180-8147)